■ 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.>

소 속 관 서

제 호 . . .

수 신: 귀하

제 목: 불입건 결정 통지서(진정인등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접 수 일 시		접 수 번 호	
죄 명			
결 정 종 류	1. 입건 전 조사종결 () 2. 입건 전 조사중지 () 3. 이 송 () : 이송관서명 (☎:) 4. 공람 후 종결 ()		
주 요 내 용			
담 당 팀 장	☎		

※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

□ **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**

◦ **수사 이의제기**: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1

-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 경우,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, 그 밖에 위법 ·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등은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,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,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

◦ **시정조치요구**: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(국번없이 1301),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의3

-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◦ **수사 심의신청**: 경찰민원콜센터(국번없이 182)
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 · 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·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**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**

◦ 범죄피해자 구조(범죄피해자보호법):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◦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법):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◦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: 각급 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◦ 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◦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: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◦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: 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에 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, 소송대리 등 상담 가능
◦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: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◦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번없이 110)
◦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, 인권상담전화(국번없이 1331)

소 속 관 서 장